교 육 부 장 관 귀하
학교법인 이사회 귀중

감 사 보 고 서

2025회계연도 (2025. 03. 01 ~ 2026. 02. 28.)

붙 임

1. 법 인 감사보고서(일반업무회계 · 수익사업회계)
2. 대학교 감사보고서(교비회계)

● 감사보고서(별지9호서식)의 피감사자(입회인) 서명 날인은
법인: 사무국장, 학교: 재무처장, 부속병원: 경리부장 등 재정부처 책임자
또는 피감사기관장(법인: 이사장, 대학교: 총장)으로 할 수 있음.

● 결산감사 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(별지 제9호서식의 1호)은
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
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으로 갈음함

학교법인 삼일학원
협 성 대 학 교

(별지 제1호 서식)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삼일학원(협성대학교)의 202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삼일학원 (협성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 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	비고 〈지적사항 없는 경우 지적사항 없음(표기)〉
1.법인 일반업무관련		〈지적사항없음〉		〈지적사항없음〉	
2.법인 수익사업 관련		〈해당사항없음〉		〈해당사항없음〉	
3.학교 관련(산단포함)		〈지적사항없음〉		〈지적사항없음〉	
계					

붙임 1. 학교법인 삼일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
2. 협성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
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26년 5월 6일

학교법인 삼 일 학 원
감 사 마 상 혁(인)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1549호)
감 사 김 성 태(인)

피감사 기관장	피감사 기관장
2026년 5월 6일	2026년 5월 6일
학교법인 삼일학원	협성 대학교
이 사 장 손 금 주 (인)	총 장 서 명 수 (인)

[별지 제1의1호 서식]

학교법인 삼일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

2025회계연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

· 지적사항(내용) :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
지적사항없음	

피감사기관장

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 손 금 주 (직인)

[별지 제1의2호 서식]

학교법인 삼일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

2025회계연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

· 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
지적사항없음	

피감사기관장 협성대학교 총장 서 명 수 직인 (서인)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삼일학원의 2025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,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6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삼일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,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삼일학원의 2026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) 지적된 사항 : [지적사항 없음]

2026. 5. 6.

학교법인 삼일학원
감 사 : 마 상 혁
감 사 : 김 성 태

피감사자 (입회인)
직 명 : 법인과장
성 명 : 염 윤

(법인 일반업무회계·수익사업회계)

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(별지 제9호 서식)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.회계규직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삼일학원(협성대학교)의 2025회계연도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6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 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삼일학원(협성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삼일학원(협성대학교)의 2026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) 지적된 사항 : [지적사항 없음]

2026. 5. 6.

학교법인 삼일학원
감 사 : 마 상 혁
감 사 : 김 성 태

피감사자 (입회인)
직 명 : 재무팀장
성 명 : 이 제 호